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3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7. 7) 상정

○ 제153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7. 7)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가. 제안이유

-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에서 전액 출연한 기관이며 재단의 이사장은 부천시장임.
- 대표이사는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임원) 제3항 및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임원의 선출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부천산업진흥재단 현 대표이사(2대 홍대의)의 임기가 2009. 7. 31. 만료됨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제3대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 경쟁 모집과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로 후보자 2인을 선발하고 이중 1인을 이사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음.
- 이에,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미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3대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주요경력	최종 학력	비고
이** (李**)	1949. 9. 21 (60세)	남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산업자원부 부이사관 (감사담당관) · 산업자원부 서기관 (전자무역팀장, 홍콩 영사, 석탄산업과장)	육군 사관 학교 졸업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radio"/>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의안 번호	제438호
의결 년월일	2009. 7. 10. (제153회)

제출년월일 : 2009. 6. 2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에서 전액 출연한 기관이며 재단의 이사장은 부천시장임.
- 대표이사는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임원) 제3항 및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임원의 선출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음.
- 부천산업진흥재단 현 대표이사(2대 홍대의)의 임기가 2009. 7. 31. 만료됨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제3대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모집과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로 후보자 2인을 선발하고 이중 1인을 이사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음.
- 이에,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미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제3대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주요경력	최종 학력	비고
이** (李**)	1949. 9. 21 (60세)	남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산업자원부 부이사관 (감사담당관) · 산업자원부 서기관 (전자무역팀장, 홍콩 영사, 석탄산업과장)	육군 사관 학교 졸업	

□ 대표이사 임명 관련 규정

-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
 - ▶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 부천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 제2항
 - ▶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의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를 시장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부천산업진흥재단 설립 목적
 - ▶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지역선도산업 육성개발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03. 2. 11.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03. 3. 13. 법인 등록
- 대표이사의 직무 및 임기(재단 정관 제8, 9조)
 - ▶ 직무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
 - ▶ 임기 : 2년(연임가능)